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김치와 그 용기·포장 등에 “한국김치” 또는 “대한민국김치” 등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도록 「김치산업 진흥법」이 개정(‘20.2.11)됨에 따라,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시 국가영역도 대상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○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영역 추가(안 제12조)

- 1) (개정 주요내용) 현행 행정구역, 산·강, 연안해역으로 정하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함
- 2) (개정 사유)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에 국가영역을 추가하여 국가간 지리적표시보호 근거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- 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10. ~ 11.)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곳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획한다.

1. 행정구역
2. 산·강 등 특정지역
3. 서식지 및 어획·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(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으로서 위도와 경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

4. 국가 영역

②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하나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각각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) <u>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.</u> <u>1.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, 산, 강 등에 따를 것</u> <u>2.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, 서식지 및 어획·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(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를 것.</u> <u>이 경우 연안해역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여야 한다.</u>	제12조(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) <u>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곳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획한다.</u> <u>1. 행정구역</u> <u>2. 산·강 등 특정지역</u> <u>3. 서식지 및 어획·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(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으로서 위도와 경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</u> <u>4. 국가 영역</u> <u>②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하나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각각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276